#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85

발의연월일: 2020. 8. 14.

발 의 자: 박주민·전혜숙·안규백

남인순・윤미향・이수진비

양정숙 · 김종민 · 장경태

이재정 · 이탄희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그런데 경영진으로 구성된 현행법상 이사회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경영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의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저해되어 왔음.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모두 주인이자 소비자인 국민인 만큼 이들의 경영이투명하게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됨.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현장에서의 경험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되며 산업민주주의에 기여하고, 노사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음.

이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에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갈등을 줄이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노동이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 전단 중 "이해관계가"를 "이해관계(노동이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가"로 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 중 1인 이상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노동이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 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내 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② 노동이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 가능)에 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 ③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해당 기관과 체결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노동이사 임기 중에 휴직한 것으로 한다.
- ④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노동이사는 새로운 노동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노동이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⑥ 해당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퇴임으로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단위로 연임될"을 "단위로(노동이사는 3년 단위로) 연임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수행실적"을 "직무수행실적(다만, 노동이사의 경우에는 이행실적 등에 대해고려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기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 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노동이사의 직무와 권한 에 관한 사항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 ② (생 략) 제1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 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 -이해관계(노동이사에 대해서 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은 특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 별한 이해관계로 보지 않는다) 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① ~ ③ (생 제20조(위원회) ① ~ ③ (현행과 략)

<신 설>

<u>④·⑤</u> (생 략)

<신 설>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는 노동이사 중 1인 이상을 감 사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제24조의3(노동이사) 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 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만,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 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이 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② 노동이사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 상 재직한 자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 수추천 가능)에 대한 보통·평 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결 과를 반영하여 임명하여야 한 다.

③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해당 기관과 체결한 근 로관계는 유지되고, 노동이사 임기 중에 휴직한 것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노동이사는 새로운 노 동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노동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노동이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는 이 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 한을 가진다.

⑥ 해당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퇴임으로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 노동이사 의 직무 수행기간을 근속기간 에 산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반 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 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기) ① (생 략)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은 1년을 <u>단위로 연임될</u>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1. (생략)
-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u>직무수행실적</u>
- 3. (생략)
- ③ ~ ⑤ (생 략)

단위로(노동이사는 3년 단위
로) 연임될
1. (현행과 같음)
2
직무수행실적(다만, 노동
이사의 경우에는 이행실적 등
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